



제429회국회(정기회)  
제4차 행정안전위원회

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검 토 보 고

〈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인터넷언론사 직접  
운용 채널 및 계정에 게재된 선거보도 포함〉

■ 한민수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1829호)

2025. 9.

행 정 안 전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 조 문 상

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 . 제안경위 .....         | 1 |
| 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..... | 1 |
| III . 검토의견 .....       | 2 |

## 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한민수의원 등 15인
2. 제 안 일 : 2025. 7. 29.
3. 회 부 일 : 2025. 7. 30.

## 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,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거나 왜곡된 선거보도를 한 때에는 이를 규제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및 트위터,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같은 뉴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도 전통적인 방송, 신문, 뉴스통신 등을 넘어 뉴미디어로 확대되고 있어, 이를 반영하여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를 규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, 인터넷언론사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관리·운용하는 채널 또는 계정에 게재된 선거보도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(안 제8조의5제1항 등).

### Ⅲ. 검토의견

개정안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인터넷언론사가 직접 관리·운영하는 채널 또는 계정에 게재된 선거보도를 포함하려는 것임.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8조의5(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)<br>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[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시사 등에 관한 보도·논평·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·편집·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·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·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·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<u>인터넷홈페이지에</u> 게재된 선거보도[사설·논평·사진·방송·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(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)에서 같다]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| 제8조의5(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)<br>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<u>인터넷홈페이지 및 인터넷언론사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관리·운용하는 채널 또는 계정에</u> -----<br>-----<br>-----. |
| ② ~ ⑨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~ ⑨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8조의6(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8조의6(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<u>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</u>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,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. | ① -----<br>----- <u>선거보도</u>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|
| ② ~ ⑦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~ ⑦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(법 제8조의5제1항).

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<sup>1)</sup>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직권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의신청을 받아 조사하고, 그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(법 제8조의6제1항~제3항).

1) 인터넷 언론의 성장과 그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따라 그 보도의 내용을 심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3월 12일 「공직선거법」 개정을 통해 창설되었음.

그런데,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보도 외에도 인터넷언론사 소유의 소셜미디어 채널, 계정 등을 이용한 선거보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, 그 파급력도 기존보다 커지고 있음.

2022년 3월 제20대 대선 이후 이루어진 갤럽 조사에 따르면,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는데 가장 많이 참고한 것으로 TV토론 46%, 신문방송 보도 29%, 인터넷뉴스 26%에 이어 페이스북·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가 18%로 4위를 기록하였음.<sup>2)</sup>

### 《 제20대 대선 투표후보 결정 시 참고한 정보원 》

| 질문)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는 데 가장 많이 참고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?<br>그다음으로는요? (보기 제시, 2개까지 응답)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|
| 2022년 3월 1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례수<br>(명) | 투표후보 결정 시 참고한 정보원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선거<br>공보<br>벽보    | 선거<br>유세 | TV토론 | 신문<br>방송<br>보도 | 인터넷<br>뉴스 | 페이스북<br>카카오톡<br>등 SNS | 각종<br>매체<br>광고 | 가족<br>주위<br>사람 | 기타 | 모름<br>응답<br>거절 |
| 제20대 대선 투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002      | 7%                | 8%       | 46%  | 29%            | 26%       | 18%                   | 6%             | 12%            | 5% | 9%             |

※ 출처: 갤럽리포트, “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- 제20대 대통령선거 사후조사”, 2022.3.1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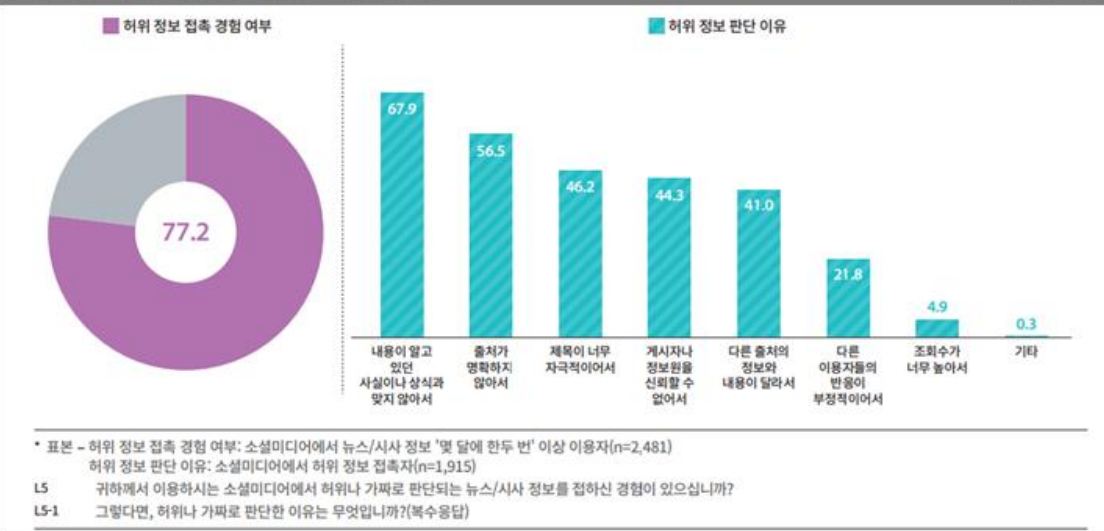
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<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>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이용자 중 77.2%가 이를 통해 허위 정보를 접하였으며,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가 확산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77.5%에 달하는 등, 소셜미디어를 통한 부정확한 정보의 획득 및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.<sup>3)</sup>

2) 갤럽리포트, “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- 제20대 대통령선거 사후조사”, 2022.3.1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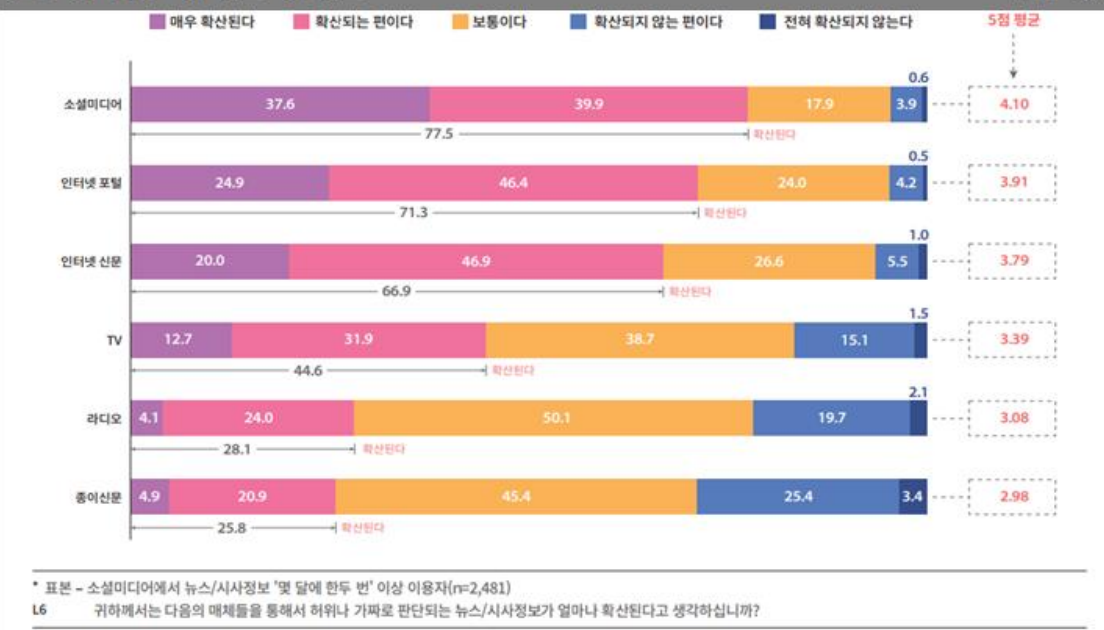
3) 한국언론진흥재단 보도자료, “<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> 주요 결과 발표”, 2021.12.21.

## 《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 접촉 경험 및 확산 정도 》

[그림 6] 소셜미디어에서 허위 정보 접촉 경험 (단위: %)



[그림 7] 매체별 허위 정보 확산 정도 (단위: %)



※ 출처: 한국언론진흥재단 보도자료, "<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> 주요 결과 발표", 2021.12.21.

그러나 인터넷언론사의 소셜미디어 계정·채널 등을 통한 선거보도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, 이를 통해 전달되는 불공정 선거보도를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인터넷언론사가 직접 관리·운영하는 채널 또는 계정에 게재된 선거보도를 포함하여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정보도 등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.

이를 통해 불공정 보도가 소셜미디어 채널 등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고, 유권자들이 균형 잡힌 정보에 기반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여 전체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더 정확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.

다만, 인터넷언론사가 보유한 채널·계정의 보도까지를 심의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, 인터넷언론사 외의 1인미디어 등 개인·단체의 계정이나 채널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바, 이를 제외하고 인터넷언론사 소유의 계정·채널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 확대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와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,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의 마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그 타당성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.

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할지는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,

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뉴미디어의 경우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하고, 1인 미디어 등 인터넷언론사 외의 기관·단체를 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를 오히려 제약할 수 있으며,

인터넷언론사가 소유한 채널·계정을 심의 대상에 추가로 포함할 경우 현행 대비 심의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심의의 장기화·적체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인력 충원 및 예산확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.

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
| 문 의 처        |
| 02)6788-5343 |